

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내무위원회

1993. 4. 12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4월 3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4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88회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 (1993. 4. 12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증평출장소장 한 대 수)

가. 제안이유

주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업무 및 관리
- 허가 및 사용료
- 행정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임 홍 식)

증평 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홍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,

그 주요내용으로는

- 업무관장 및 관리에 따르는 사항
-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
- 기타 사용료 감면, 허가제한,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, 손해배상, 사용료 반환과 행정사항에 관한 사항으로

본 조례안은 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제6조(관리부서) ①항의 조문중 "이" 을 "으로하며"로 하고, (별표) 문화회관 사용료 제1항 적요중 제3호에 "단, 1일 사용시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하지 아니한다" 단서 신설

7. 심 사 결 과

- 수정동의안 9인중 9인 찬성으로 제6조(관리부서)를 자구수정 및 (별표) 문화회관 사용료 제1항 적요중 제3호에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도 원안대로 의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0. 심사보고 첨부서류

- 증명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
- 조문 대비표
- 증명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3. 4. 12

제안자 : 이병두의원외 8인

1. 수정이유

- 자구 수정을 통하여 관리부서 업무관장의 명확성을 기하고
- 문화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초과사용료 징수에 따른 예외규정으로 단서조항을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

2. 수정 주요골자

- " 이 " → " 으로부터 " (안 제6조)
- 단서신설 → " 단 1일 사용시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" ((별표) 제1항 적용중 제3호)

증명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증명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중 "이" 을 "으로 하녀" 로 한다.

단 (별표) (제1항 적요중 제3호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만, 1일 사용시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하지 아니한다.